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654 |
|----------|-----|

2017.09.11.(월)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4일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송재구)

가. 제안이유

○ 수산식품의 가공·직판매장·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 및 관리(제5조)

- 충청북도 직영 원칙, 도지사가 필요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사용허가(제6조)

- 시설 사용.수익은 도지사 허가 필요
- 사용.수익 허가 방법(제7조)
  - 입주업체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사용.수익 허가 기간(제8조)
  - 사용기간은 5년 이내, 1회 3년 연장 가능
- 사용료 부과(제13조)
  - 해당 시설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 부과
- 운영위원회(제19조)
  - 위원장 행정부지사, 위원 10명 이내, 입주업체 선정 등 심의

###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직판매장·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 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7조제1항 중 ‘사용신청서’ 부분과, 안 제19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는데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수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수산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이하 “수산식품 거점단지”라 한다)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설치·운영한다.

- ②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2. 고품질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명품 브랜드화
3.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판매·홍보
4.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5. 내수면양식 생산·연구 및 보급
6. 수산동식물 관련 전시·홍보시설 운영 관리 등

##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은 충청북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수익 허가 방법) ①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 허가기간) ① 수산식품 거점단지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 1회에 한 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수익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관계 법령, 조례, 명령,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9.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10.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화재·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제3장 사용료 등 납부

제13조(사용료 부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물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운영 상황 및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장 유지관리 및 보수

제1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

가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및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장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수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업체 선정, 사용료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 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수산물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

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수당)**①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제4조(여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제정이유

- 수산식품의 가공, 직판매장, 연구생산 등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여 내수면어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세 입 : 시설물 임대료 및 양식어류 판매 수입
- 세 출 : 운영비(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 3. 관련조문

- 운영 및 관리(제5조) 및 사용료 부과(제13조)

## 4.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도에서 직영
- 운영비는 도비 부담
- 양식어류 판매수입은 매년 3~4% 증가 적용
- 인건비 및 관리비는 물가상승률 대비 1~3% 증가 적용

나. 추계의 결과('18~'22) : 세입(11.6억원), 세출(15.0억원)

다. 재원조달 방안(부족액) : 도비부담(3.4억원)

※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대로 인한 세입 확대에 도비부담 점차 감소 예상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농정국 축산과장 김창섭

##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억원)

| 구 분 |             | 1차년<br>( '18년) | 2차년<br>( '19년) | 3차년<br>( '20년) | 4차년<br>( '21년) | 5차년<br>( '22년) | 계    |
|-----|-------------|----------------|----------------|----------------|----------------|----------------|------|
| 세 입 |             | 1.1            | 1.2            | 2.8            | 3.1            | 3.4            | 11.6 |
| 수 입 | • 시설물 임대수입  | 1.1            | 1.2            | 1.3            | 1.4            | 1.5            | 6.5  |
|     | • 양식어류 판매수입 | 0              | 0              | 1.5            | 1.7            | 1.9            | 5.1  |
| 세 출 |             | 1.4            | 2.5            | 3.1            | 3.7            | 4.3            | 15.0 |
| 운영비 | • 인건비       | 1.4            | 1.5            | 1.6            | 1.7            | 1.8            | 8.0  |
|     | • 유지보수비     | 0              | 1.0            | 1.5            | 2.0            | 2.5            | 7.0  |

※ 산출근거(3년차 / '20년 기준)

### 〈세입〉

○ 시설물 임대수입 : 1.3억원

- 1.3억원 = 9,592m<sup>2</sup>(시설물 면적) × 13,553원(m<sup>2</sup>당 연간 임대료)

\* 시설물 임대수입은 임대료 부과비율 20/1,000(%) 적용

○ 양식어류 판매수입 : 1.5억원

- 1.5억원 = 3,000kg(쏘가리) × 50,000원/kg당

\* 거점단지 연구생산동에서 자체생산·판매

### 〈세출〉

○ 인건비 : 1.6억원

- 1.6억원 = 280만원 × 12개월 × 3명 + 60%(상여금)

\*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준(6급 1명, 7급 2명)

○ 유지보수비 : 1.5억원

- 1.5억원 = 100억원(총건축공사비) × 1.0% + 0.5%(상승분)

\* 준공후 2차년도부터 1% 적용하고 매년 0.5% 상승분 반영